

2022년도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17.(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8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42건(안전번호 제2022-38434호~3937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38434호~38438호는 ☹☹☹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량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전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38439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해당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7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7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8434호~3843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843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2-3843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안전번호 제2022-38439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ISD)를 판매하여 기기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B 위원: 다만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8439호는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8440호~3937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명탐정 피카츄 (2019)'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8455호 '(영화)명탐정 피카츄 (2019)'는 2019. 5. 9. 개봉한 해외 영화로 하드에서 38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수퍼 소닉2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8767호 '[중점](영화)수퍼 소닉2 (2021)'은 2022. 4. 6.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배드 가이드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8820호 '[중점](영화)배드 가이드 (2022)'은 2022. 5. 4.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8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8834호 '[중점](영화)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22)'은 2022. 5. 4.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모바일 웹하드에서 1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 4건을 포함한 1,97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2-38440호~3937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8440호~3937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38434호~3843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8439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2-38440호~3937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24.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